더샵 청주그리니티 무순위(사후) 2차 입주자모집공고

청약Home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 070-5076-3745

주택유형	규제지역여부	무순위(사후) 자격요건	
민영주택	비규제지역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없음	없음	없음	미적용

구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순위(사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2.01.26.(수)	2026.11.12.(목)	2026.11.17.(화)	2026.11.20.(금)	2026.11.23.(월) ~ 2026.11.24.(화) [2일간]	2026.11.28.(토)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6.06.1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무순위(사후)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 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국내거주로 불인정되어 청약신청 불가합니다.
>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
APT 잔여세대 (무순위)	O		X				

■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2 단지 유의사항

■ **청약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사항**

- 본 아파트는 2026년 1월 입주개시한 아파트로 **견본주택 운영을 종료하여 관람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현장 주변 및 단지 여건 등을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계약 당시 선택되었던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옵션에 따라 시공이 완료된 아파트**입니다. 따라서 **최초 공급계약 시 체결된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을 모두 수락하는 조건으로만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하오니, 이점 반드시 확인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급계약 체결 후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의 추가, 변경 또는 취소는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는 입주지정기간이 종료된 단지로써, **당첨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 후 해당 세대를 개방할 예정**이오니 청약 신청 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해진 계약체결일에 계약(계약금 납부 및 공급계약서 작성)하지 않을 경우 당첨 포기로 간주하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급계약 체결 후 정해진 기간 내에 계약금, 잔금 납부일정에 따라 공급금액을 모두 납부하여야 하며, **대출기관 알선은 진행하지 않으므로 청약 신청 전 반드시 본인의 대출 가능 여부, 대출한도, 자금조달계획 등을 면밀히 고려**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11.12.(목)**이며(청약자격 요건 중 나이, 거주요건 등의 판단기준일), 주택관리번호는 **2026910287**입니다.

■ 본 주택은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합니다.(외국인 청약불가)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01.26.(수)**이며 최초 주택관리번호는 **2021001011**이므로,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주택공급가격 및 단지여건, 유의사항 등의 세부 내용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금회 공급 주택형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발생한 불법행위재공급 시 청약 마감된 주택형으로,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추가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미계약 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서 본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분	무순위(사후) 접수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6.11.17.(화)	2026.11.20.(금)	2026.11.23.(월) ~ 2026.11.24.(화), 2일간	2026.11.28.(토)
방법	■ (PC·모바일) 청약홈 (09:00~17:30) ■ 현장접수 불가	■ (PC·모바일) 청약홈	■ 등기우편 접수 (*등기우편 도착일 기준)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 1747번지 '더샵 견본주택'	■ 방문 계약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 1747번지 '더샵 견본주택'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청약 신청은 1인 1건만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2022.02.16.)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내용
전매제한기간	없음

■ **본 주택은 현재 전매제한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사용승인 완료되어 입주가 가능한 준공 후 공급하는 주택이므로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에 따라 계약자는 소유권이전등기(본 주택과 관련한 분양대금 및 제세공과금 완납 후 가능) 완료 후 전매(매매, 증여, 임대 및 기타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 포함)가 가능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충청북도 청주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사업주체/수분양자 각 1/2 납부]

-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이 되며, 공급계약 체결시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각 1/2씩 분담하여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납부하기로 합니다. 또한, 분양계약자가 분담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세액 :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 + 프리미엄)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해당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납부세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 납부방법 : 정부수입인지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e-revenuestamp.or.kr)에서 구매 후 출력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거나, 우체국 은행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분양권 매매 당사자뿐만 아니라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등기 대행하는 법무사도 구매하여 첨부할수 있습니다.
 ※ 인지세 납부 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서(소비담당)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 정부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직접출력 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발행 불가)

3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공급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개신동 767번지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30~38층, 7개동 총 1,191세대 중 **잔여 1세대**

■ **입주시기** : **2027년 01월 (* 본 아파트는 2026년 01월 입주개시한 아파트로 금회 공급분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의 납부 의무가 있는 모든 금액을 납부 완료 후 즉시 입주 가능)**

■ **공급대상**

(단위: ㎡, 세대)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잔여 세대수	잔여세대 동·호 내역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소계					동	호
2026910287	01	099.8624A	99A	99.8624	32.3657	132.2281	59.8177	192.0458	56.9427	1	106	302
	합계									1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원)

약식표기	동	호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분양가				추가부대경비	합계	계약시	2027.01.29.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99A	106	302	110,383,379	240,277,837	24,027,784	374,689,000	2,400,000	377,089,000	37,708,900	339,380,100

※ 금회 공급 세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 청주시 공동주택과 - 39867호 (2026.09.15.)로 입주자모집공고를 승인받은 불법행위 재공급 입주자모집공고(2026.09.21. / 주택관리번호 2026930035)에 따라 공급 후 미계약 세대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상기 공급금액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2.01.26.)의 분양가와 사업주체가 해당주택을 재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비(재판매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고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세대별 인지대,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및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잔금에 대하여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잔금 납부와 관련하여 대출금융기관 알선을 진행하지 않으며, 계약자는 이를 인지하고 지정된 기한 내 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공급금액(잔금)을 납부기일 이후에 납부할 경우 미납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약식표기	동	호	발코니 확장 공사비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2027.01.29.
99A	106	302	18,000,000	1,800,000	16,200,000

※ 상기 세대는 최초 공급계약 당시 선택된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옵션(미선택)에 따라 이미 시공이 완료된 관계로 청약자는 위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옵션(미선택) 상태를 수락하는 조건으로 청약이 가능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본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이 불가하오니 청약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아파트 분양대금	국민은행	713737-01-006219	구룡개발㈜
발코니 확장 공사비			

※ 상기 지정계좌로 직접 무통장 입금[당첨 동·호수, 공급신청자(계약자) 성명으로 입금]하고 무통장입금증을 계약 시 지참하여 주십시오.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1011001홍길동' / 101동 201호 계약자 → '1010201홍길동'

※ 분양대금은 약정된 납부 일정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사업주체는 납부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로 안내해 드리지 않습니다.

※ 금회 공급주택은 계약이 해제된 세대를 사업주체가 취득하여 재공급하는 주택이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 「신탁법」 등에 의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 방식으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이었으나 현재 해당 신탁계약이 종료 및 해제됨에 따라 해당 세대의 소유권이 사업주체(시행사)에 있는 바, 분양대금은 사업주체(시행사) 명의의 위 납부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상의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분양대금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는 효력이 없으며, 매수인(수분양자)은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분양대금 납입을 인정받지 못함에 있어 매도인(사업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 대금 오납입에 따라 계약 미체결, 연체료 발생 등의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가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4 청약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구분	내용
대상자	■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가능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필요로 하는 무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
청약신청 제한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 신청 불가 - 동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 분 또는 예비입주자 중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분 - 동 주택에 당첨되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분 - 부적격 당첨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 공급질서교란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으로 무순위(사후)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 ■ 무순위(사후) 공급세대수의 **900%**까지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입주자 선정 및 예비순번 배정

5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청약신청 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무순위	**2026.11.17.(화)** 09:00~17:30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PC·모바일) 청약홈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홈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 (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무순위 → 주택명 및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및 청약자격 확인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 서비스**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6.11.20.(금) ~ 2026.11.29(일) (10일간)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6.11.20.(금)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및 계약 안내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 **제출기간 : 2026.11.23.(월) ~ 2026.11.24.(화), 2일간**
- **제출방법 :** 등기우편 접수 [※**상기 제출기간 내 우편이 접수(제출장소에 도착)**되어야 합니다.]
- **제출장소 :**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 1747번지 '더샵 견본주택' (우편번호 302243)
- **제출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모바일 신분증 불가 (실물 지참 필수) ※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함께 제출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포함)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주소변동사항, 변동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본인과의 관계 확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 전부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관계 확인 ※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 전부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세대원 중 청약신청자만 생업상(단신부임) 해외 체류 중일 경우 국내 거주자로 인정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기록대조일 :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까지, 출입국 기록 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개명한 자의 경우 개명 이전 성명의 발급본 추가 제출 필요 (기록대조일 : 본인 생년월일 ~ 개명 이전 일로 설정) ※ 발급처 :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포함)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분리세대)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재혼가정의 자녀(청약신청자의 친자녀가 아닌 자녀)로서 청약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주민등록표등본 상 당첨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 전부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전세사기 피해자 확인서류	본인 또는 세대원	▪ 전세사기 피해자 낙찰주택 소유기간(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그 임대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낙찰받아 소유한 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한 경우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 단, 낙찰 주택이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이면서, 주택공시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① 해당 임차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낙찰 증빙서류 : 매각허가결정서 사본 또는 매각결정통지서 사본 ③ 해당 임차주택 등기사항증명서 원본 ④ 채권자의 확인서류 : 배당표, 배당요구신청서 등의 사본 또는 배분계산서 등의 사본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본인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4조제8항에 의거 세대원 중 청약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에 종사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등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인정 불가 ▪ 해외에서 발급 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 공증 첨부 필수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 청약신청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중 세대원이 해외에 일정기간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 여부 확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기록대조일 :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까지, 출입국 기록 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개명한 자의 경우 개명 이전 성명의 발급본 추가 제출 필요 (기록대조일 : 본인 생년월일 ~ 개명 이전 일로 설정) ※ 발급처 :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직계존속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주소변동사항, 변동사유 및 발생일,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소명자료)		○	사업주체가 필요시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무주택 소명 등	▪ '주택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 기준'에 따른 해당 서류 ※ '소형·저가주택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확인원,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서 정하는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기타 증명 서류(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축물확인서 등) ▪ 당첨자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와 관련한 사례가 다양하여 사업주체가 추가로 증빙을 요구하는 서류
		○		당첨사실 소명 등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상기 제 증명서류는 **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1.12.)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계약 체결**

- **계약일시 : 2026.11.28.(토) 10:00~12:00**
- **계약장소 :**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 1747번지 '더샵 견본주택'
-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 시	○		계약금 입금 증빙서류	본인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이체) 확인증 ※ 현장수납 불가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모바일 신분증 불가 (실물 지참 필수) ※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함께 제출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발급구분 : 본인발급용 (본인 직접 발급) ▪ 발급용도 : 아파트 계약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 불가 ※ 정부24 온라인인감증명서 제출 시 발급용도 및 제출처('더샵 청주그리니티') 정확히 기재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대조하여 일치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서명으로 대체
	○		정부수입인지 (종이문서용)		▪ 공급계약에 따른 인지세 분양계약자 부담분(수입인지 기준세액의 1/2)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 해당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대리인 계약 시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 계약으로 간주 (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	○		위임장		▪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견본주택 비치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발급구분 : 본인발급용(본인 직접 발급) ▪ 발급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 불가 ※ 정부24 온라인인감증명서 제출 시 발급용도 및 제출처('더샵 청주그리니티') 정확히 기재
	○		신분증, 도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모바일 신분증 불가 (실물 지참 필수) ※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함께 제출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상기 제 증명서류는 **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1.12.)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 체결**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 체결 일시 :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 상기 '당첨자 계약 체결' 구비서류 참조
- **유의사항**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 체결 일시는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주택형의 계약 현황 및 예비입주자 계약 진행에 따라 예비입주자 선정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시 현금 수납은 불가하며, 계약금을 즉시 이체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일 이체한도 확인)

7 참고사항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 · 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기타 유의사항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청약신청 접수일시 경과 후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청약으로 청약 당첨(예비입주자 선정 포함) 시 당첨자로 관리되지 않아 재당첨 제한 등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으나,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본 아파트의 무순위 입주자로 선정되어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청약 전 반드시 현장 및 주변 여건, 단지 여건 등을 확인 후 청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대표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이 우선하며,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s://www.thesharp.co.kr → 단지 → 입주단지 → '더샵 청주그리니티' 상세보기)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사업주체	건축공사 시공사 (부지조성공사 외 일체)	부지조성공사 (터파기 포함)
회사명	구룡개발㈜	㈜포스코이앤씨	리드이앤씨㈜
주소	충북 청주시 서원구 안뜸로25번길 14, 203호 (분평동)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흥로 307 (죽도동)	충북 청주시 서원구 안뜸로25번길 14, 1층 (분평동)
법인등록번호	150111-0280979	174611-0002979	150111-0039416

더샵 청주그리니티 | **[분양문의] 070-5076-3745 | 운영시간 : 평일 10~17시**